

바

성폭력

Vol. 8
2014 상반기

1

6 기획특집 [고위공직자와 성폭력]

- 7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
- 13 거듭되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보며
- 17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여성단체의 고민

2

24 쟁점과 입장

- 24 반(反)성폭력 법 정책의 쟁점
- 32 작동하지 않는 법, 고용평등법 제14조2항 불이익 조치 금지

38 프리즘 [성폭력피해의 책임과 대응]

- 39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 43 피해자 보호의 민영화, '4대악 보험'

47 성문화 읽기

- 47 LGBT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무지개 성 상담소'로 찾아오세요!
- 51 '진단' 받거나 딸이 되거나

55 생존자 말하기

- 55 싸움의 의미: 거의 전부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일

3

62 성폭력과 사람들

- 62 내 안에서 손 잡은 천사와 악마: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

67 사례연구

- 67 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석

73 통계 이야기

- 7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 현황
- 80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읽을까?

8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 84 영화 <아델의 삶> - 아델의 색깔은?

4

90 권말코너

92 아낌없이 주는 나무



1

기획특집 [고위공직자와 성폭력]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
거듭되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보며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여성단체의 고민

{ 고위공직자와 성폭력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정부조직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쉽게 잊혀지고 대부분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이번호 기획특집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실태와 현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살펴본다. 또한 언론인이 본 시각에서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맥락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거듭되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방안을 고민해본다. 그간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의 좌담회를 통해 여성단체의 고민과 향후 과제를 정리해본다.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

란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2010년 7월, 대학생 토론대회가 끝난 후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한 국회의원이 대학생들에게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을 조언해주겠다”며 “뭣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에게는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며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강용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희롱 사건 전말이다.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대법원의 퇴행적인 판결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

고 하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적절한 여성 비하와 성희롱 발언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감싸기, 여기자를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전 국회의원은 여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자 최연희 전 국회의원은 술에 취해 음식점 사장인줄알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결코 해명이라고 볼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곧바로 음식점 주인은 성추행 피해를 입어도 되느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몇몇의 남성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최연희 전 국회의원 옹호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원래 정치인들은 기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단지 여기자와 친해지고 싶어서 어깨에 팔을 두른 것 뿐'이라고 편들었다.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홀륭한 사람을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변별력을 상실한 부적절한 행위로 죽일 수 없다'며 성추행 행위를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로 두둔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전 국회의원은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사퇴를 유보하였고, 법원의 선고유예라는 최종 결정에 힘입어 다음 선거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최근에는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의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다.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대검찰청 검찰본부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나 이진한 검사는 검찰본부장 경고라는 면피용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현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아 여론이 잠잠해기를 기다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추행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고위공직자 성폭력사건마다 반복되는 가해자 감싸기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성폭력 가해자가 도피하도록 도운 꼴, 인턴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방미 수행 기간에 일어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턴을 '가이드'로, 엉덩이를 '허리'로, 알몸을 '속옷바람'으로 성추행을 '격려'와 '문화적 차이'로 표현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다.¹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 성폭력 사건에서 더욱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를 알게 된 한국문화원 직원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무마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었다. 더욱이 성폭력 사건이 미국 경찰에 신고 접수되자 윤창중 전 대변인의 도피 귀국을 급히 도왔다는 의혹도 일었다.

1)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 사건 무마 은폐 의혹을 밝히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미국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건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법상 경범죄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이상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는 한 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경범죄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후에 자동 종료하게 되어 있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도 사건발생일(2013년 5월 7일)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5월 7일 자동 종료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해임한 이후 미국 수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전국여성연대를 중심으로 1000명의 고발인단이 구성되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역시 미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정치적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고위공직자의 성폭력사건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주목도 많이 받을뿐더러, 여론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게 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은 그 자체로 정치적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은 그 정치적 위기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이후의 행보에 성폭력 가해 이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0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단둘이 있던 자리에

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능여성단체 간부인 피해자가 우근민 지사를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자, 우근민 지사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결정이 나자 우근민 지사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의결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까지 벌였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 소송기간은 4년이 넘었고, 우근민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로 공직생활을 지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다시 도지사가 되었고, 올해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기자나 업무 차 동행한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많은 반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거나 동석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가해행위에 대해 단순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등의 방식²⁾으로 시간을 벌면서 여론을 잠재우고 성폭력사건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힌다. 대중들은 성폭력 가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만한 일’로 그간의 공적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역고소 전략을 사용하면 가해자가 무고한 누명을 썼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고위공직자 성폭력사건은 쉽게 잊혀지고, 또 쉽게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 무감각한 태도, 우리안의 섬뜩함

2010년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성폭력 사건 당시, 시민단체 등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으

2)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0년 8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공동주최

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강용석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이례적인 출당조치를 받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제명안 덕분이었는지 강용석 전 의원을 구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도 대단했다. 특히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용석 전 의원의 '실언'을 두고, 국회의원들에게 강용석 전 의원에게 돌을 던질 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왔느냐며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고 물었다. '이만한 일'로 제명이 처분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국회의원이 있느냐 강용석 전 의원을 '죽음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자고도 했다.

고위직 정치인이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는 대목이다. '이만한 일'로 고위공직자의 '공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전히 성희롱 전력은 공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서사라는 통념을 마주하게 한다. 같은 정치인인 여성 국회의원을 두고도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폭력적 사고가 그들 안에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에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 성폭력 가해를 한 대다수의 고위공직자는 사건 이후 다시 당선되거나, 복당되는 등 정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 한 표를 던져 그들을 정치적 위기에서 구해낸 수많은 유권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성폭력을 가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학습 효과 덕분이다. 종편 예능에 나와 설전을 해대는 성폭력 가해자를 보며 우리가 환호하는 모습이 섬뜩한 이유이다.

거듭되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보며

이유진 | 한겨레신문사 기자

지난 2월24일,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한국 언론 사상 초유의 성명서를 냈다. 지난 연말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고위공직자 성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일갈이었다.

이들 언론인은 성명서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한다’며 이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중징계,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 감찰본부가 사건을 축소한 채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것이다. 2012년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최아무개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던데 전주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이 터져나왔다.

검찰 안에는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 매년 교육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 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 문제만큼은 학습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성 인식은 무척 낙후돼 있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적절한 성적인 언행으로 견책, 면직, 감봉, 정직을 받았다고 공개된 검사만 5명이다. 피해자는 같은 직종의 검사도 있다. 그밖에는 기자, 변호사 등이다. 가해자들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막론하고 피해자들을 그저 ‘여자’, ‘몸’으로 환원시키고 대상화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술을 마시고 입을 맞춰 달라고 하고,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졌다. 이번 사건만 봐도, 이 지청장은 여기자들에게 “뽀뽀 한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여성단체들이 매년 선정하는 성폭력 걸림돌에도 법조인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상을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알린다거나, 연애사건으로 몰아가는 것 등이다.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사건 직후 참여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가 검찰이 이 검사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가해자를 중징계 및 엄중처벌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3월 초 2014년 성평등 걸림돌에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과 함께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선정했지만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은 사안의 경미성을 강조하거나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뒤 피해 당사자가 겪은 참담함과 무력감은 엄청났다고 한다. 피해자가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질 때 늘 뒤따라 붙는 피해자 책임론 공세 속에 그는 홀로 악전고투 해야만 했을 것이다. 설상가상 지난 2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성추행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한편,

“우리 이차장”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한 뒤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징계양정한 것으로 안다”고 가해자를 감쌌다. 이쯤 되면 조직적인 2차 피해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검사들 사이에서조차 이 지정장에 대한 낮은 처분을 두고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 묻는 일갈이 터져나왔다.

기자와 취재원인 고위공무원들의 관계는 무척 긴밀하다. 때로는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동료처럼 술과 식사를 나누는가 하면, 때로는 서로 으르렁대며 치열하게 갈등한다. 기자가 취재원과 어울리는 이유는 관계가 좋아야 한마디라도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되도록 서로 친밀감을 표시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다수의 공직자들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적인 존재로 종종 대상화하고 부적절하고 노골적인 추행을 일삼는다. 기삿거리를 쥔 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기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능수능란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는 특히 사건의 진실을 들춰내려는 여성 언론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고위 공직자와 술자리를 한 여성 기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불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할까 싶을 정도로 사례가 많다. 술기운을 핑계로 신체 어루만지기, 손 주물럭거리기, 뽀뽀하기, 껴안기, 블루스 강요하기, 귀에 대고 숨 불어넣기, 얼굴 맞대기, 음담패설 등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성희롱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더 곤란해지는 때도 많다.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물아가거나, 숙취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그만한 일로 왜 까탈스럽게 문제를 삼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하며, 문제제기를 할 때도 도움을 거절당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쉬쉬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은밀하게 사과받는데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그뒤엔 “아무개

기자는 무서운 페미니스트”라며 가해자 집단이 은근슬쩍, 그러나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별다른 제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승승장구해 주요 간부로 성장하는 일이 많다. 기자들을 딱히 어렵게 여기지 않는 고위직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을 대상화하며 배제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한 뒤 남성들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남성 동성사회’(세즈웁)의 욕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을 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배척하고, 남성들은 자기들끼리의 특권 의식과 패거리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모든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성을 탈락시키고 상대를 오로지 ‘여자의 몸’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비단 이성에 남성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 고위공직자들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만큼, 조직적 네트워크 안에서 비호를 받으며 권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뒤 정부는 ‘4대약’ 가운데 하나로 성폭력을 철폐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실수나 스캔들로 이를 다뤄버리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성폭력은 권력관계’라고 하듯,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의 원인은 남성 중심적 성문화 외에도 그동안 너무도 쉽게 잘못을 용인해온 관행, 그리고 잘못해도 피해입지 않게끔 승인받은 권력 네트워크라는 삼박자가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한다.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여성 기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닐까 싶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취재 영역에 여성을 투입하지 않거나 피해를 폭로하려는 행동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형성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여성단체의 고민

김미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박차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토리 | 본 상담소 사무국장

정리 : 란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토리 오늘 좌담회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느끼는 점들을 거침없이 나눠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은 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나도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성단체의 대응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가감 없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

귀한 일을 할 사람에게 ‘성폭력’ 가해는 오점?

김미순 (이하 김) 다른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면 그 사람한테 이게 오점인 것처럼 다들 가해자를 옹호하고 안쓰러워한다. 성폭력 사건에만 연루되지 않으면 인생이 평탄하고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라는 가해자 동정론이 특히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박차옥경 (이하 박차) 사실 성폭력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인데, 고위공직자라는 위치에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해자들은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면서 더 억울해한다.

토리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사건화되는 계기가 사건 당시에 기자가 동석해서 누군가 공론화 하거나, 또는 선거를 앞두고 저런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폭로되는 방식이 대다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 그게 이슈가 되었다기 보다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자리의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누군가 폭로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중들은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김 과거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이런 일이 비밀비재 했는데 문제가 안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대중들도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젠더에 대한 이해나 반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지 않아서 그렇다.

토리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져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짚고 넘어가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건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 같다. 정부의 대응이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수위이고 획기적일 만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이후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차 그게 왜 그럴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의식의 문제인데 지난 30여년간 여성단체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그런데도 잘 변하지 않는다. 여성단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든다. 법제도 운동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의식과의 간극은 너무

무거운 숙제인거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상적인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토리 여성단체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면서 힘든 점이 많다. 예컨대 여성단체가 대응을 해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잘 읽혀지지 않는다. 여성단체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지원을 목적으로 대응하는데,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시선이 불편하다.

김 한편으로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기 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을 느낀다. 여성단체는 고위공직자로서 성폭력에 대해 무감각한 감수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다른 정당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토리 선거 기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집중하는 핵심 기조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감수성 없는 사람이 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본질이 시민들과 잘 소통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박차 여성연합의 경우 야당소속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여당 소속 고위공직자인 경우 사안을 크게 만들어 대응한다고 비난하는 보수언론사도 있었다. 똑같이 대응하는데 진실과 달리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 여성단체에서의 대응을 성폭력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

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공인은 고위공직자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예인들은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활동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과하고 자중하는데,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해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고위공직자에게 인권 의식이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국회 청문회가 전부인 것 같다.

토리 확실히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력은 투기를 했다거나, 학력 위조를 한 것과는 달리 어떤 사적인 부분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아직 존재하는 것 같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폭력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 문제이고,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부정하는 인식들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안에 짙게 깔려있다.

여성단체의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토리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자의 볼을 만지는 성폭력을 했는데, 일 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우리 부장은 항상 내 볼을 그렇게 만지는데 그럼 내가 겪은 일이 성희롱이냐’면서 마치 과하게 반응한다는 듯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김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서 무감각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세 번 결혼한 여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전에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던 새어머니가 아이를 때려서 시댁 식구들이 몰아세우는데, 그 새어머니가 혼잣말로 ‘그 까짓게 뭐라고’ 이런 대사를 한다. 본인은 더 큰 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그 정도의 일이 무슨 큰 일이냐는 거다. 폭력이 일상화되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다.

박차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정치적으로 여성인권과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고, 여러 제도와 절차를 만들라는 요구도 해왔다. 문제는 제도와 대

중간의 인식 차이, 변하지 않는 인식의 문제가 계속 남는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 여성단체에서는 ‘뭘야! 또 야?’ 이런 느낌이 든다. 대중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대응해 왔던 방식이 대중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젊은 단체들도 많이 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이 여성인권 이슈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진 아이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법 제도와 대중의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예전에는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이나 공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이 상당부분 제도화되어서 그러한 공간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지만 제도와 다르게 여성단체가 해야 할 몫도 있다.

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다보면 운동적 시각을 지니고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걸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지원자만 남는다. 200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상담소들이 생겼는데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이라기보다 제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곳들도 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반성폭력운동의 주요한 문제의식과 맞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차 여성연합도 제도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우리가 매몰되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고민인데, 실상 우리도 안에서 우리의 대응 방법, 방식, 전략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숙제인 것 같다.

좌담회에서는 여러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그 뒷이야기도 나왔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단체 사무실로 걸려오는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으로 지난하고 지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박차옥정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혈”이라는 마무리 발언을, 김미순은 “너무 바쁘다, 자중 좀 해라”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명의 여성단체 활동가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을 정치 공세로 보지 말고 여성단체가 말하는 본질적인 지점에 집중할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상 좌우도 없고, 권력의 상하도 없이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 정치권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는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쟁점과 입장

반(反)성폭력 법·정책의 쟁점

작동하지 않는 법, 고용평등법 제14조2항 불이익 조치 금지

프리즘 [성폭력피해의 책임과 대응]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피해자 보호의 민영화, '대약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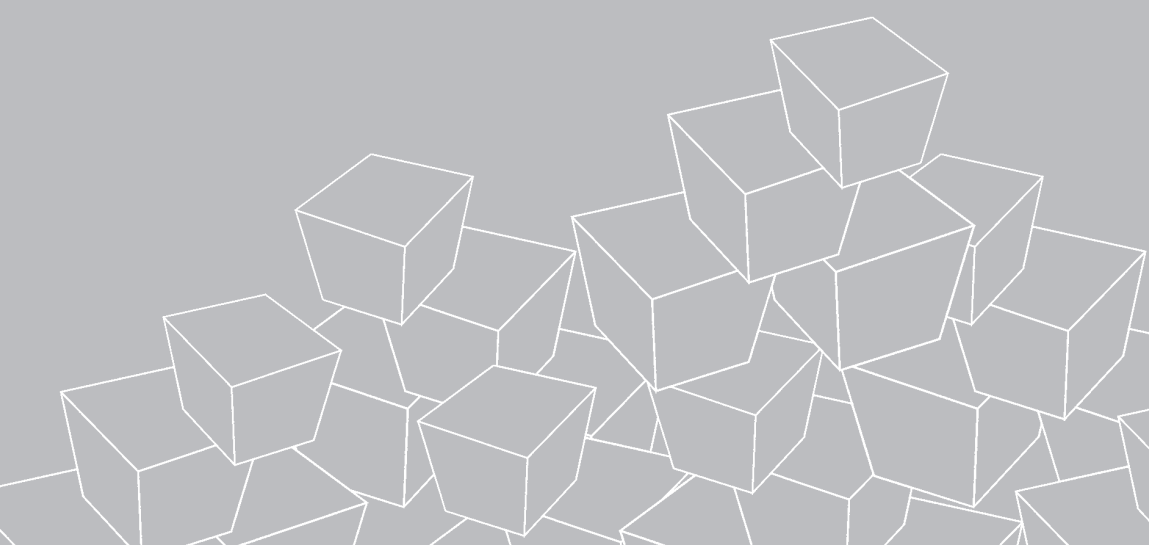
성문화 읽기

LGBT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무지개 성 상담소』로 찾아오세요!

'진단' 받거나 딸이 되거나

생존자 말하기

싸움의 의미: 거의 전부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일



반(反)성폭력 법·정책의 쟁점

이미경 | 본 상담소 이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문제제기

우리사회에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0년 까지는 한 해동안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가 4,000건 이하였고 신고율도 2.2%¹⁾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해마다 약 2만 건의 성폭력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되고, 전국 성폭력상담소에는 연간 8만 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²⁾.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몇 퍼센트나 상담과 고소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말하기(speak out)가 늘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만 살펴보더라도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고소한 피해자의 25%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통계/경찰범죄통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정책자료/통계자료).

는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안전행정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 고 여학생의 68%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³.

이 글에서는 성폭력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별화된 범죄'라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그동안 마련된 법 제도가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성폭력관련 법 정책의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본 성폭력 법 정책의 쟁점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 : 보호에 갇힌 '피해자화'의 문제

우리사회에서 피해자는 통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약자 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가부장적 '시혜'이자,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이 아닌 '배려' 차원의 접근이라는 지적⁴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언어화하여 이야기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적극적인 주체적인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성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평생상처',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 '영혼의 살인' 등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고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하여 완전히 무기력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 그 피해의 경험을 대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피해자화의 정치'이다.

3)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전행정부(2013),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2013. 8. 2)

4) 박강우(2006),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자기결정권의 함의",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 이호중(2008), "성폭력 2차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 토론집, 국회의원 최영희,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8.11) ; 조형(류음)(1996),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담당자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 성폭력 전담제의 허(虛)

성폭력 사건은 전담수사관, 전담검사, 전담재판부에 의해 진행하도록 성폭력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수사 제도와 전담재판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력 관련 법실무가들의 인식 수준은 예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여성인권운동단체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그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⁵ 또한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수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판·검사 직무교육에서도 비록 그 시간이나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평등 교육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판검사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 검사, 판사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자들이 2년 이하의 기간만 성폭력 업무를 전담한 뒤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식과 노하우를 갖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문성 있는 성폭력 전담자가 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차선택으로 각 검찰청마다 성폭력 전담 검찰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 부임하는 전담 검사와 팀을 구성해 성폭력 수사를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의 이행 :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

성폭력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넓혀온 피해자 권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⁶ 그럼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

5) 이미경(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현주소: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2013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2013. 10. 10), 한국피해자학회.

6)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3조의2), 비디오 등 증거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제294조의3) 등이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내용의 통지(제259조의2),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제260조), 피해자 등의 진술권(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제294조의4)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음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의 인공유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⁷ 실제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이 연간 몇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공유산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나 통계도 거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강간 입증'의 문제는 거의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최근 상담현장을 조사연구한 자료⁸를 보면, 강간입증의 기준이 지원기관과 병원마다 다르며,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 성인 여성들의 인공유산 시술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태 단속강화로 입장을 선화하고 있다. 나아가 낙태를 위해 강간피해를 위장한다는 우려⁹까지 겹쳐지면서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민·관 협력관계(governance) : 제도화의 이면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반여성폭력운동에 재정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 국가적 차원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민간단체는 자율성과 창의성, 독립성에 입각해 내담자를 지원하고, 정부정책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7) 형법(제269조)에 낙태는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의해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 및 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 등과 함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201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연구용역보고서.

9) 국민일보 기사(2011. 9. 24), "낙태 단속 우려해 '강간'사유 적고 합법화 위장?"

그러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NGO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¹⁰ 법제화 운동의 결과로 일부 상담소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회계감사 및 행정전반에 대한 획일적인 감독을 한다. 예를 들어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을 정부가 진산화하여 중앙집적하려 하거나, 컴퓨터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보관 등의 피해자 사생활 및 인권침해소지건으로 정부와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또한 반정부 행사 참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철회조치 등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화의 두 얼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상호협력해갈 지는 지난한 토론과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예산 : 불안정하고 적은 예산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이행의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 및 전망을 세우는데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미흡하다.

더욱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2011년부터 연간 600억원의 기금이 법무부에 의해 집행 중이다. 그러나 벌금집행액의 5%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 이 기금은, 최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명령, 노역장 유치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전체 벌금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사업’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총 139억원을 기존 범죄피해자

10) 김보연(2006),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김현정(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서미라(2002),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신상숙(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Kyungja Jung(2013), *Practicing Feminism in South Korea : The women's movement against sexual violence*, Routledge : London and New York.

보호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했다. 이는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의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재원의 출처를 옮기는 뚜렷한 근거나 철학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후 기금운영의 안정성, 예측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해자 엄벌주의 : '괴물'과 '나'의 분리

최근 성폭력 대책으로 전자발찌, 유전자 정보은행,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강화 등의 제도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 강력한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에서 서둘러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화학적 거세 제도의 경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를 집행하게 되어 있어 치료라기보다 처벌의 성격이 강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사회전반의 공포와 분노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협 관리를 강조¹¹하는 정부의 규제적 경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약물치료 명령이 범행동기가 소위 '성적이기만 한' 소수 범죄 이외에, 폭력과 증오, 권력의 남용이 원인이 되는 다수 성폭력범죄를 '치료'할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의 문제로 보게 하는 등 성폭력 이슈를 더욱 비정치화, 병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등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엄벌주의는 가해자를 나와는 상관없는 괴물로 분리하여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강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성찰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11)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능력과 대응능력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권인숙 김두나(2014),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개소 기념 포럼 자료집(2014. 2. 20).

문제를 안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 실적위주 예방교육의 실효성 의심

성폭력피해자보호법(제5조)에 의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 단체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별 분류에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해야하고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해자 처벌강화 일로였던 법개정이 구체적으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는 생애주기별 표준교재개발과 사이버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 및 강사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 등을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맺음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에서 출발해 여성인권 단체의 이슈화와 지원, 학계의 관심과 연구, 언론보도, 국제사회의 영향, 정부와 국회의 법정 등 상호협력에 의해 마련되어왔다. 특히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가 피해생존자를 '보호할 대상'이거나 '의심과 비난'하는 양극단으로 위치 지우는 것에 대응할 근거를 열어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현실은 젠더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이상 살펴본 성폭력 피해자 권리는 법적, 제도적인 틀은 구축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디 바뀌는 반면, 법·제도는 특정 사건이 발생해 언론의 관심을 받다보면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까지 발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와 같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그 과정들이 생략된채 급하게 법부터 마련되었을 때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마련된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들이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의 담당자들은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세심한 실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폭력 문제해결의 '기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법·정책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그 초점을 이동해야 할 시점이다.

작동하지 않는 법, 고용평등법 제14조2항 불이익조치 금지

이소희 |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문제제기에 불이익조치로 화답한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 상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일 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의했고, “오일 마사지를 해줄까?”, “사랑한다.”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직속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직속상관은 “회사를 조용히 나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사직을 종용했다. 직속상관이 본인 부서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오산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인사팀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했다.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성희롱 행위를 반복해온 상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사팀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예전과 동일할 수 없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오고간 진술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인사팀은 “여자가 남자를 꼬셔놓고 이제와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의 소문을 유포했고, 조

직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렸다. 회사는 1년 동안 지속된 구애행위와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일 마자시해줄까?”라는 발언에 대해서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2주 정직’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실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징계의 무게 또한 가해자가 행위를 반성하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해야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가해자, 직속상관,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기로 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동료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아내어 사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하고, 왕따를 주도하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한마디로 그녀에겐 ‘난센스’였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었고, 민사소송을 결심한 피해자에게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었다. 상식과 신념을 토대로 피해자를 도왔다. 하지만 상식적 행동이 화살이 되어 그녀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인사팀은 그녀를 불러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뒤이어 회사는 근태 불성실을 이유로 그녀에게 ‘정직 1주’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조치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전문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급기야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직무 정지를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독방으로 대기

발령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점심시간과 오전·오후 10분 동안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명령하고 그 외의 이동조차도 금지했다.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시선에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후 대기발령 장소는 독방에서 사내 도서관으로 변경되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했고,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은 고역이었다. 성희롱 사건 신고 이후 딱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성희롱 사실을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두 여성노동자는 불이익에 시달렸고 여전히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고용평등법 제14조2항 불이익조치 금지, 작동하지 않는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 14 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 자동차는 이러한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례는 35.59%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기업은 발생의 원인을 짚고 조직의 문화를 점검하기 보다는, 문제 제기자를 재빨리 조직 안에서 제거하거나 입막음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한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한 문제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인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업무전환, 부당한 징계와 협박, 왕따 괴롭힘 등 반복되는 형태의 불이익은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동료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내게도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학습하게 하여 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태 속에서 피해자는 보통의 용기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호소 할 수 없고, 동료들은 보통의 정의

로움만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 수 없다.

한편, 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은 현실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않고 있다. 고용평등법 제14조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적인 경고와 조치를 받은 사례¹⁾는 그동안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 문제제기와 동시에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성희롱과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무엇’,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엇’으로 보며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직면하고 정의 내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법과 현실의 연결 작용은

불이익조치를 겪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는 노동자가 차별행위에 반대하거나 차별 관련 구제절차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보복행위(retaliation)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보복적 의도로 불이익 조치를 겪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직장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 노동자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당 기관에 구제절차를 요청한 사실을 안 ‘직후에’ 사측이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고, ‘성희롱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연방대법원 ‘but-for causation’, 409U.S.228)을 사측이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차별 관련 진정 절차에 참여 중인 당사자 및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람과 긴밀한

1) 사업주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사실을 진정하였고, 사업주는 ‘법정 시비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바로 해고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관계(close association)를 가진 사람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평등법에서는 ‘괴롭힘(harassment)과 ‘불이익조치(victimization)를 차별과 관련하여 ‘기타 금지된 행위’(other prohibited conduct)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불이익조치가 독립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국은 불이익조치를 ①평등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 ②평등법에 근거한 소송과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 제공 ③평등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한 기타행위 ④가해자가 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행위를 했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손해(detriment)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판결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등 법과 현실의 연결 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만, 법을 근거로 현실을 바꾸려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을 결단한 두 여성노동자는 여성·인권단체²⁾와 함께 르노삼성자동차와 대표이사, 연구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항 위반으로 진정·고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 상당수가 겪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집약 판인 동시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중요한 사안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과 불이익 조치를 진정·고발한지 두 달이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르노삼성자동차 인

2)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및 불이익 조치 고발단체: 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팀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성희롱 사건과 불이익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결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급히 르노삼성자동차의 일련의 행태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용기 있는 두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각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성폭력 피해의 책임과 대응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악 근절' 정책에 의해 성폭력 피해는 안전과 범죄대책 중심으로 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안전담론으로만 한정하고 가해자 개인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설정하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여 배제하고, 보호의 명목으로 국가 권력과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번호 프리즘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책임과 대응을 주제로 안전담론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피해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의 책임과 대응을 구성하는 통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책임과 대응을 오롯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진단해본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출시를 발표한 '4대악 보상보험'을 통해 국가의 사회 안전 정책안에 성폭력 피해의 책임과 대응이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를 살펴본다. 성폭력 피해의 구제를 국가가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과는 어떠한 맥을 함께 하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본다.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권인숙 |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몇 년 전이었다. 딸의 대학 수시논술시험을 위해 차로 데려다 주는데, 길은 차로 꽉 막혀 있었고 한 시간에 1미터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의 패닉 상태였다. 그때 떠오른 게 오토바이였다. 터널 두 개만 연속으로 지나면 고시장이었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이를 태어 줄 수 있냐고 하자 “00대 수시 보려는 거죠?”라며 흔쾌히 태워 주었다. 십여 분 뒤 아이에게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람들에게 그날의 활극을 이야기 했다. 오토바이가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거나, 생각 한번 기민하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랐다. 모두 처음 하는 소리가 “납치해가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찌려고 여자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워!”였다. 그날 네 다섯 명의 여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반응은 모두 다 똑같았다.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대학수시시험을 치루는 것보다 밤도 아닌 아침에 오토바이에 납치 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주장하니!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크다니, 그리고 그 문제에 최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이 신념은 무엇이더라는 의문이 생겼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한 뒤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것은 골목길이었다.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데 그때마다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며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나의 선택을 합리화해야 했지만 무언가 자식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좋은 엄마 되기 위해 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하지만 아동기적 보호와 성인이 다 되어서 하는 보호양식은 분명 다를 것인데 그 차이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딸은 성장을 하여도 보호의 대상이고 그 보호는 많은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넘쳐나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잔혹한 아동성폭력을 주로 다루는 성폭력 보도는 쉽게 두려움을 확산시킨다. 그렇다면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성폭력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가? 두려움이 클수록 조심할 것이므로 긍정적인가?

아동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폭력은 아는 사람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계의 범죄이고 일상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지금과 같은 사회인식하에서는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두려움이 만드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회피행동효과가 적은 범죄라는 것이다. 물론 회피행동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책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귀가시간을 일찍 앞당기고 공원 등의 위험한 공공장소에는 밤 시간에는 나가지 않으며 술 취해서 벌어진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옷차림을 검열하고 혼자서의 여행을 자제하는 것 등이 가장 대중적인 성폭력 회피행동들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혼자 밤길을 가는 여성이나 '마더'에서와 같이 밤늦게 골목길에서 남성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여성이나 간혹 보도되는 택시의 성폭력

사건들의 이미지는 이런 회피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절대 내 인생에서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활동을 제한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삶을 산다고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아니다.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탈레반 정권하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친족 성폭력이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더 과감하게 벌어진다. 여성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본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없기 때문이다. 남녀가 교제를 할 경우 여성을 집에 바래다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예의가 부족한 것이 되는 경우도 그렇다. 이런 문화에서 여성은 낯선 가해자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남성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된다.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면 될수록 여성이 낯선 가해자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두려움이 커져 남성이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 여성이 조심하면 할수록 관계 속에서 여성은 약자화되고 자기 방어능력은 작아진다. 남성이 지배와 통제를 남성다움의 기준으로 인식하면서 성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집단적으로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두려움에 회피행동을 하고 두려움을 크게 내면화한 여성일수록, 그리고 성폭력을 겪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여성일수록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진다. 과장된 두려움은 본능적인 대처 감각을 마비시키고, 소리 한번만 지르면 되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폭력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기 쉽다.

성폭력 두려움이 클수록 피해극복도 힘든 경우가 많다. 성폭력 두려움의 형성은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 부모의 피해의식, 여성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함께 배어서 형성되기에 성폭력 두려움이 크면 피해의식이 크거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 정상적인 여성성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가 많다. 성폭력은 남자아이도 많이 겪는다. 미국의 경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정치는 18세 이전 여자아이들 5명 중에 1명이, 남자아이들은 10명 중에 1명이 성폭력을 겪는다는 것이다. 소아성애자중 남아성애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의 중요한 피해자 선택 기준이 취약성을 놓고 보더라도 남아가 여아보다 덜 취약하지는 않다. 남성 성폭력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나 남아는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도 2011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사업보고서를 보면 성폭력 피해 아동 중 남아는 16%였고 2010년도에도 15%에 달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두려움은 여아를 중심으로만 형성되어있고, 반성폭력 교육도 여아에게만 향해있다. 남자아이는 최소한의 필요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없고, 여성은 과도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며 성장하는 것 모두 건강하지 않다.

성폭력 두려움은 성폭력만큼이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삶의 양식,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여성의 자기 평가와 자기 검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과 같이 성폭력 두려움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타당한지, 모성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성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여성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선택의 담론이 많이 열려야 한다. 성폭력 두려움도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가 되도록 상식의 재편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의 민영화, ‘4대악 보험’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선보일 것이라 발표했다. ‘4대악’ 피해에 대해 ‘보상보험’이라고? 우선 이 낯선 조합에 대해 언론에 소개된 바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으로 명명하고, 이를 척결하는 것을 핵심공약이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할 ‘4대악 보상보험’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일부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기존의 상해보험이 신체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나, 4대악 보험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일체와 특약에 따라 최대 수 천 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4대악 보험은 보험이 가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4대악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은 4월 중에 나온다고 한다.

얼핏 보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도 해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등 나쁘지 않은 피해자 보호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 대상 자발적 가입과 각종 특약 설정 등 사보험의 형태를 띠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기금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정책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4대약 보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해상에서 출시될 4대약 피해보장 “프렌즈가드상해보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망 확보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상품으로, 지자체나 학교 등 단체도 소속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라는 점에서 국가 사회안전정책으로서 그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안전 정책의 민영화(Privatization)로서 4대약 보험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공기업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철도 민영화에 이어 최근 의사협회의 파업으로 이어진 의료분야 민영화를 위한 상업화 정책까지 이번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약 보험의 등장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대약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현대해상에 따르면, 현재 4대약 보험의 일차적인 구상은 지자체나 학교 등 단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하는 국가 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하고 향후 기업의 후원이나 민간기부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단체의 소속원이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대약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 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각 상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4대약 보험이 없는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재판결과와 관계 없이 상담소나 보호시설, 피해자의 요청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신적 치료비 지원도 포함된다. 4대약 보험은 기존의 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대부분 중첩되며, 오히려 4대약 보험이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기존의 피해자 지원보다 축소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약 보험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피해자 지원 정책과 함께 중복지원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4대약 보험에서 전제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비를 위한 기금 지원과 중첩될 수 있다. 결국 4대약 보험과의 중첩성 때문에 기존의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삭감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기존의 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중첩되는 4대약 보험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협동하여 돈을 모으고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현재 현대해상이 보험료를 기업의 후원, 민간 기부를 통해 마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4대약 보험상품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 민간이 협동하여 금전을 모을 수 있는 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민간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4대약 보험은 국가의 예산을 4대약 보험에 배분함으로써 기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감축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이라는 장기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 안전 정책은 국민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다. 이러한 사회 안전 정책을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의 형태로 의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가입금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보험에 4대악 피해 지원을 의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안전 및 피해자 구제를 영리화함으로써 피해지원 자체를 계층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올바르게 효과적인 구제책은 국가의 책무

사실 4대악 보험은 그 대상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대상을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라는 자의적인 연령 기준에 한정하는 근거도 불명확하며, 피해 내용을 의료적으로 진단 가능한 상해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수년 간 지속될 수도 있고 당장의 진단을 받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입증 방식을 경찰서 신고 및 사고조사의 결과로 정하고 있어, 보험 사기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꽃뱀’ 의혹에 시달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게다가 경찰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실 확인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유무죄 확인이라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경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4대악 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게 되었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향후 피해자 정보인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4대악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영화·영리화 흐름 속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까지 포섭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악(惡)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안전을 해할 뿐이다.

LGBT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무지개 성 상담소』로 찾아오세요!

야름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2009년 부산의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동성애적 감정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듣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고 여러 심리검사 결과 극도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임이 드러났지만, 학생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거나,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사내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는 식의 상담을 받았다. 동성애적 성향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전학을 권유받기도 했다.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함께 반성문을 써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자살에 대한 학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됐

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이 신체 건강을 해하는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피해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사회적·심리적·정신적 공격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구타를 하든 불쾌한 시선을 보내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와 혐오의 태도는 분명하게 전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으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하며 막다른 길로 내몰린다. 참다못해 자해·자살시도에 이르는 일이 유난스럽지도 예외적이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LGBT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지속된다. 학교에서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민감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또한 차별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교사들이 “동성애자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거나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면 때리겠다”며 차별을 암시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한다는 게 청소년들의 증언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학교는 동성애를 문제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동성친구에게 고백을 한 사실에 책임을 물었다. 이런 환경에서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은 학교의 대응 과정을 지켜보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쉽다. 괴롭힘을 목격하는 학생들은 나서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어렵게 된다. 가해자나 목격자나 타인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잃는다면 괴롭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청소년을 ‘여성스럽거나’ ‘남자답게’ 성장하도록 강제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동성애자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남자인데 목소리를 가늘게 내는 등 젠더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들이나 교사·청소년기관 상담가에게도 불편하게 여겨지고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혀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물론 비슷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받았을 교사나 상담가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인권의 문제로 인지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자신의 편견을 돌아볼 기회나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수 있다.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 다른 교사들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공간일 수 있고 수업 중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이 학부모의 항의를 받을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 이런 제약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 단계를 밟아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실천에 관한 사례를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해 편견 없이 이야기하고 하루 한차례씩 동성애자인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 모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거나 한참 탐색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과정이다.

당장 괴롭힘 당하는 동성애자 학생에게 단 한명의 지지자만이라도 곁에 있다면 교육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산 괴롭힘 사건에서 보듯이 괴롭힘이 일어난 것이 확인된 그 순간 교사와 상담가의 적절한 개입은 피해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을 만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과정과 LGBT청소년을 대

하는 마음가짐 훈련은 꼭 필요하다. 성소수자인권단체 네 곳이 모여 2년여 간의 작업 끝에 『무지개 성 상담소: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2014,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저, 양철북)를 펴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LGBT청소년들을 만나며 쌓아온 단체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가진 편견을 점검하면서 LGBT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보자. 실제 현장에서 접할만한 생생한 상담사례들과 함께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말을 담았다. 정보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울 때는 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와 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교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일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부산 괴롭힘 사건을 기억하며 이 책을 교사와 상담가를 비롯해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한다.

‘진단’ 받거나 딸이 되거나

안팎 |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활동가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 리그와 여성 리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뛰어난 남성이 스포츠라는 영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돌려 말하면, 여성에게도 여성 나름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어디선가 이렇게 배웠다. 이 문장을 스스로 적기엔 기분이 나빠 어디선가 인용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글을 찾지 못했다. 찾은 것은 오히려 e-스포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대회도 남녀를 구분해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여하간 저렇게 배웠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성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성별 논란이 불거진다. 마치 여성이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듯이, 약물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듯, 남성 호르몬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듯이. 티 나지 않는 약물 복용 — 규칙 위반 — 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남성적인 외모’니 ‘중저음의 목소리’니 하는 것들을 증거라도 되는 양 내밀며, 진짜 성별을 따져 묻는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지난 해 가을 한 여성 축구 선수의 성별 진단을

요구하며 리그 참가팀 감독들이 단체로 리그 보이콧 선언을 한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직 힘들다”,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등의 신문 기사들과 함께나마 그 선수는 경기장으로 돌아왔지만, 국제 경기에서 비슷한 시비에 휘말려 결국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는 경기장을 떠나야 했던 선수도 있다.¹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선수와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선수, 극도로 섬세한 움직임으로 화살을 과녁 중앙에 꽂거나 공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예찬 받는 것을 보아 왔는데, 이상하게도 여성 선수가 ‘여성의 수준’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을 시작한다. 단속적으로 체체나 도핑 테스트를 받으면 체급 논란(이런 경우를 접한 적은 없지만)이나 약물 복용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십 수 년을 여성으로 살고 여성 선수로 활동해도 이 의심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몸무게를 재거나 소변 검사를 하면 명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그럴 때 옆에 몇 사람이 붙어 있으면 속일 수조차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외형으로 성별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렇다면 성별이란 불명확하고 속일 수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런 논란은 자연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불명확한 것을 기준으로 억지 구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다.

인터섹슈얼 같은 말들이 여전히 낯선 한국에도, 몇몇 선수들에 대한 기

1) 2008년 제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여성 안드로겐과다증 관련 규정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통해 여성 경기 출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성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과 위원회의 의학 관련 인사들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 수치를 특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실은 남성호르몬이 운동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과 검사는 공개하지 않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규정이지만, 어쨌든 성호르몬을 암묵적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규정이 생긴 이후 성별 논란에 휩싸였던 한 선수는 검사를 받은 후 경기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한 매체가 그가 양성인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한 후 이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으며, 이 때문에 또 다른 소문들이 이어졌다. 그가 여성호르몬을 투여 받고 있다든가 하는.

사를 통해 양성인이니 양성자니 하는 말들이 꽤 알려졌다. 몸의 성별조차도 두 개로 함부로 나눌 수 없음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두 개의 성별을 엄격히 나누고 있는 대회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그들에 속하지 않는, 얌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문이다. 성별이 두 개가 아니라고 배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그 둘 안에 우겨 넣으려 애쓰기 시작한다. 성별은 두 개고, 그 하나인 여성이라는 성은 신체적으로 결코 남성 넘을 수 없다는 자신의 믿음을 성별 진단이니 뭐니 하는 방식으로 기어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별 구분이 없는 대회나 젠더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대회를 상상해 본다. 실현은 차치하고 상상부터가 물론 어려운 일이다. 누가 어떤 대회에서 어떤 기록을 낼지, 그것이 어떤 평을 받을지 말이다. 반대로 언젠가 남성호르몬이 신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밝혀져서, 마치 격투기에서 체급을 나누듯 호르몬 수치로 경기를 나누는 대회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어느 쪽도 썩 맘에 들지 않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로서 당장 상상이 가능한 것은, 똑같은 필드에서 달리는 선수들 사이에도 키나 체중 차이가 있듯, 어쩌면 인종 차이가 있듯, 그리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듯 — 예컨대 사람들은 다리가 길면 달리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흑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근육 구성이 육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나쁘게 여기거나 그것을 경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소위 성별 검사로 불리는 일련의 검사들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선수들이 있음을 문제 삼지 않는 정도다. 정확히는, 그런 선수가 있을 수 있음을 문제 삼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검사는 하지 않는 정도다. 정체 모를 호르몬 검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여성 선수로 살아온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대회가, 지금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이다.

남성 경기에 나왔으니 남성이려니 하고 여성 경기에 나왔으니 여성이려니 하겠지만, 실은 선수들의 성별 정체성은 (정체성에 상관없이 몸에 따라 인식

되는 대로 배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우선 제외하면 —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애초에 문제 될 영역이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성별은 불분명한 영역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애초에 불분명한 것을 억지로 재단하는 일이 아니라, 더 유연한 무언가를 생각해 내는 일이다.

다른 한편, 여성에게만 한계가 있으리라 여기고 그래서 여성에게만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그렇듯 약자인 여성 선수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경기의 규정대로 두 개의 성만을 생각했을 인권 위는 그 사건을 남성 감독들의 여성 선수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당장은 다행스런 일일지라도, 그 선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같은 대응을 받고서도 탐탁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서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건 당시 있었던, 그 선수가 속한 팀의 높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이 한 말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다.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상해 본다. ‘여성으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력’이나 어떤 외양들을 가지고 타인의 성별을 문제 삼고 호르몬 검사 따위로 그것을 결정하려 들지 않는 동시에 — 실은 남자이지 않느냐고 묻고 그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는 동시에 — 한 사람의 소속 팀이나 어떤 말들로 쉽사리 (그리고 ‘호의적으로’) 그를 여성으로, 심지어 딸로 호명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악의적으로도 호의적으로도 속단하지 않는, 그에 따른 굴레들을 씌우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의심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부정행위자나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것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남의 언어로 호명된 여성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부르는 여성 선수라는 이름으로 그가 달릴 수 있는 경기장을 상상해 본다.

싸움의 의미

거의 전부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일

탁수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간 소명을 가지고 임해왔던 직업을 잃게 되었다. 소중히 여겨온 직장 동료, 업무상의 인연들도 없었다. 물론 버는 돈도 끊겼다. 경력 단절은 오늘도 하루만큼 더 진행 중이다.

가해자와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지켜보는 일 또한 못지않게 고되다. 피해 직후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고, 불면, 우울 등 건강을 위협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의 무게도 버겁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염려를 바라보는 참담함, 또 그들을 다독이며 나의 선택을 끌어안고 홀로 앓는 쓸쓸함도 숙제다.

불안에도 점점 익숙해진다. 오늘도 사건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허구가 마구 뒤엉킨 채 내가 종사했던 업계를 종횡무진 달리는 중이리라. 한때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다녔던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내 이름, 가해자 이름이 줄줄줄 연관검색어로 나타나 혼비백산하기도 했다.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는 아무리 애써 봐도 자꾸만 낮아진다.

사건 직후 입은 타격과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보면 얼추 이 정도인 것 같다.

2년 4개월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곧 가해자와의 두 번째 대질신문이 있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앞으로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어렵פות이 짐작만 해볼 뿐이다. 지난한 과정이다.

소송으로 본의 아니게 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평판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그토록 하고 싶던 일을 하며 꿈에 다가가고 있는 줄로만 알았더니, 탄탄대로 걸으며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나 내게 묻는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대부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이 슬며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고 나니, 그들도 용기를 얻게 되는 걸까.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건데 말이야”, “OO이(배우자)도 모르는 일인데 너만 알고 있어.”로 시작되는 식이다. 학생 때 길에서 만난 바바리맨, 대중교통에서 만난 치한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회사에서의 강도 높은 성추행, 학창시절의 강간 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다 울어버리는 이들도 꽤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큰 사건이었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던 간에 그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오래된 일이어도, 아주 경미한 사건이어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당시 합리적인 대처를 해볼 수 없었다는 점, 그렇다 보니 트라우마를 오롯이 겪었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점이였다. 수습사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다녔다거나,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는 거짓말로 직장을 관둔 후 다른 일을 구했다거나, 가해자인 교수에게 본인의 학위가 달려 있었다거나, 경찰서까지 갔지만 부모님이 아시고 놀랄까봐 서둘러 합의하고 끝냈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내가 당한 피해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한 피해를 입고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성폭력에 정면으로 대처했을 때 피해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들은 이 글을 시작하며 길게 적어 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여러모로 침묵이 '효율적'이라 자신을 세뇌시키며 상처를 견디게 된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런데 '침묵의 효율'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자가 생겨버린 것이다. 커다란 죄책감이 나를 덮쳤고, 나는 늦었지만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추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 그보다 큰 이유는 견디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견딘 나에게, 나 자신의 지난 1년(나는 고소장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 고소 가능 기한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서야 접수했다)에게 늦게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덧붙여 내가 꿈꾼 최종의 이상적인 그림은 나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유해한 상사가 사라진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왕 고생하는 것,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얼추 이루어지는 중인 것 같다. 그러나 유해한 상사가 사라진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는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것이 자주 그렇듯 허무하게 무너졌다. 대표이사가 심복으로 여기는 이들로부터 자행되는 조직적인 괴롭힘(사내 정치꾼들의 '알아서 기

는 행위였을 수도 있겠지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데다, 나를 돕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피해주기 싫은 마음도 더해져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홀가분하다. 극복해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홀가분함이 지속되고 있다. 가해자 고소 이후, 회사는 CEO고 직원이고 할 것 없이 어처구니없는 처신들로 내게 여러 번 더 상처를 주었지만 덕분에 나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곳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미련 없이 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그 후 반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인재 이탈이 활발하다. 직원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의지가 없는 일터가 밟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종종 상상한다. 내게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 할부금, 아픈 가족의 병원비, 엄한 시댁, 피해를 털어놓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배우자, 돌봐야할 자녀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겁 많은 내가 밥그릇 잃어가며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또 나의 싸움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가족들, 친구들, 활동가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었을까.

첫 대질신문이 있었던 날,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업도 미뤄두고 함께 있어주기 위해 올라오셨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내뱉는 가해자의 말을,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함께 견뎌주셨다. 조사가 끝나고 아버지를 배웅하는 길, 능청스레 웃으며 “딸 키우기가 만만치 않지, 아빠?”하고 물었더랬다. 아버지는 역시 능청스레 웃으며 “그래. 버겁다 이놈아.” 하셨다. 무겁고 무거운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능청 말고는 답이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싸울 여건이 안 되어 울분을 삭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들을 자주 떠올린다. 싸울 여건이 되는 것도 행운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싸움이 힘들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들의 대표주자라고 상상한다. 그들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면 조금 덜 힘들어진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게 과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은 이들은 꼭 그 날 밥을 사고, 커피를 산다. 그때마다 나는 성찬 앞에서 싸움닭이 고추장 먹는 것 같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 헤어질 때면 내가 고개를 돌릴 때까지 힘껏 손 흔들며 배웅한다. 그저 기분 탓일까. 그들의 인사는 묘하게 결연하다. 정면돌파할 수 없었던 당시의 자신을 대하듯, 자신의 상처를 돌보듯 나를 대한다.

이 싸움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 소송을 잘 이겨보여서, 정면으로 부딪쳐볼 수 없었던 그들도 과거의 그들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본다.

이제 전체의 1/3쯤은 온 것일까?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생체리듬을 스스로가 한심해하고 있는 것만 빼면, 그러저럭 순항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의 한 가운데를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산다.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용기도 잃지 않았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싸움을 시작했지만 나는, 아니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 정도라면 내 ‘싸움의 효율’도 괜찮지 않은가 싶다.



3

성폭력과 사람들

내 안에서 손 잡은 천사와 악마: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

사례연구

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석

통계 이야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 현황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읽을까?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영화 <아델의 삶> - 아델의 색깔은?

내 안에서 손 잡은 천사와 악마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

민희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보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두 가지 기억들은 마치 천사와 악마가 팽팽히 싸우듯 서로 내 마음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팽팽하게 힘을 겨룬다. 그러다가 나쁜 기억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마음 속이 온통 괴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 반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때는, 마음 속 공기가 맑아지고 감사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나쁜 기억들로 나를 가득 채우는 악마의 무기는 나의 아빠와 엄마이다. 이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두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가져다주는 천사의 무기는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준 감사한 사람들이다. 내 마음 속에 는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아빠는 7살 때부터 나를 만지고 핥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옷을 벗겨 강간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내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내 몸을 업신여기

는 말들로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도 했다. 또 엄마는 아빠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보호해주지도, 구해주지도 못했다. 내가 성인이 되어 아빠를 고소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온갖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을 나와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지금 나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기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슬프다. 아빠와 엄마를 생각하다보면 내 인생은 정말 나쁘고, 불행한 것 같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점점 사라져간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천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천사에게 내가 쥐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감사'이다. 일단 천사가 이 검을 손에 잡으면, 악마는 바람에 구름이 밀려나듯 내 마음 속에서 쫓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마음 속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 맑아지고 화왕해지면서,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9년 동안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나의 친구. 나를 친딸처럼 생각해주시고, 갈곳없는 나를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그 친구의 부모님과 가족들.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상담사 선생님,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선생님들. 내 말을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사건을 수사해주신 강력계 형사님, 이해심 깊은 국선 변호사님. 늘 내 일기를 읽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님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생존자 분들. 내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써주신 작가님들, 나에게 늘 자극이 되어주시는 신부님,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어준 대학 친구들까지.

끝도 없이 감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침내 천사가 내 마음에 자리잡는다. 나는 언제나 천사가 이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악마는 천사에게 조금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천사는 악마에게 늘 자리 한 칸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 그리고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슬퍼할 때, 나는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없게 된다. 마치 내게 소중한 것 따위는 없이 온통 나쁜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하다보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엄마와 아빠도 내 삶의 일부이다. 다만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없었을 뿐. 천천히 생각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나는 좋은 엄마 아빠를 갖지 못했지만, 그 빈 자리를 더 많은 좋은 사람들로 채워나가면 된다’고. 내가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들을 잘게 쪼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받으면 된다고 말이다.

내가 21살 때, 버마 난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태국에 간 적이 있었다. 그 때 우리 대학생들을 인솔해주셨던 신부님이 계시는데, 활동 말미에 신부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민희야, 넌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내 안에 비석처럼 자리를 잡았고 날마다 내게 힘이 되어주는 빛들 중의 하나이다. 한 때는 신부님 같은 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슬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부님을 나의 좋은 아빠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빠로부터 얻고 싶었던,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을 신부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머지 것들도 다른 남자 어른들로부터 받으며 산다면 부모님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의 아버님으로부터는 ‘따뜻한 잔소리’를 듣고, 앞으로 생길 남자친구로부터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게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좋은 선생님도 계신다. 내가 그 분

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 내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상처를 주게 될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아이도 낳기가 무섭다고. 그 때 그 분께서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 해주셨다.

“하나양(내 닉네임)은 반드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돌려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 반대로 절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다. 상처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없게 되기도 한다고. 당신께서도 어머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낸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서 엄마가 되고 싶다. 내가 신부님을 아빠 같이 생각하듯, 이 분도 내게 엄마 같은 분이시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며 살고 싶다.

나의 부모님은 세상이 놀랄 정도의 상처를 나에게 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놀라울 정도의 '사랑'을 돌려주었다. 나는 내가 아주 힘든 일을 겪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힘들 것임을 안다. 앞으로도 괴로운 기억에 시달릴 것이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많은 벽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곁을 9년 동안이나 지켜와준 내 친구의 말을 믿는다.

“민희야, 기억해줘. 언제나 너의 응원석 중앙엔 내가 있어. 이제 나의 가족들이 너의 가족들이 되었고, 네가 우리 가족에게서 따뜻함만 받았으면 좋겠어. 난 늘 너를 지지해.”

나는 이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내게 준 마음의 공간에, 엄마 아빠도 버리지 않고 간직할 것이다. 나를 낳아주신 사람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지만, 나의 소원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잘 안 된다. 오히려 분노와 원망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되새기며. 마침내 내가 엄마와 아빠를 용서하게 되는 그 날, 내 마음에는 커다란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과 함께 엄마 아빠까지도 고요히 자리잡게 될 것임을 믿는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해준 사람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조화로운 곳이 되기를 바란다.

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석

하이다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전국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4군데이며, 이 중 열림터는 일반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시보호시설을 제외하고 단 두 군데여서 비장애인의 경우 열림터가 아니면 서울지역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열림터에는 비장애인 생활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013년 하반기부터 세 명의 지적장애인¹ 피해자가 열림터에 입소하였다. 원래 비장애인 생활인이 대부분이었던 열림터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림터가 이전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해당하는 생활인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다.

지원방향은 비장애인 생활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심리적 지원 및 성폭

1)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력 재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 치유 회복과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로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열림터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생활인 입소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특화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입소한 생활인들에게 새로운 입소자의 장애 여부를 처음부터 공개하고 열림터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장애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열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다.

주중 오후 4시 50분에서 5시 사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바리스타 교육훈련이 끝나고 열림터로 간다는 생활인 A의 전화다.

A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열림터 입소 당시, 사법적인 절차가 종결된 상태였다.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지지적인 원가족이 없는 상태여서 열림터는 A의 가족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재정관리(장애인 수급비, 교육훈련비) 및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가 겪은 성폭력 피해의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성폭력 재피해 예방과 성교육을 포함한 타인과 관계 맺기,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 등 A가 버겁다고 느낄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는 현재 열림터에서 6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열림터 생활규칙 및 가족회의까지 새로 입소한 생활인들에게 열림터 활동가들의 스케줄을 알려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 혼자서는 가스레인을 쓸 줄 몰라 A가 식사당번일 때는 활동가가 불안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활동가가 곁에 없어도 혼자서 국도 끓이고 요리책을 보고 음식 만들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A의 꿈은 바리스타다. 그리고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준비해서 퇴소하는 것도 꿈이다. 다른 생활인들로부터 A가 퇴소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A와 상담을 하면서 퇴소 이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A는 자립해서 살 때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들떠서 이야기하곤 한다.

A는 입소당시 열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였다. 활동가들 또한 A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 불안이 컸지만 지금은 서로가 신뢰하고 열림터 퇴소 후 자립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자기결정권

“나를 잊지 마세요...” 열림터에서 짧게 3주를 살다간 생활인B가 남기고 간 말이다. B는 친모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고 고소 직후 열림터에 입소하였다. B는 사건 발생 후 특수학급 교사의 도움으로 신고에서부터 열림터 입소의뢰까지 안정적으로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B의 가족은 사건 신고에서 열림터 입소까지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였고 B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 감정을 활동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였다. B의 가족은 B가 거짓말을 잘하는 특성이 있어 성폭력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B를 양육할 수 없다는 말과 성인인 언니가 있지만 B에게 폭력을 행사하니 열림터에서 보호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B는 열림터에 입소한 다음날부터 퇴소하기 전날까지 퇴소하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열림터에서는 B가 생활에 적응해 가기를 설득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B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열림터만 아니면 다른 쉼터도 좋다는 호소에 B의 가족에게 타 장애인쉼터로 연계를 안내하자 가족들은 B를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유는 열림터는 일반쉼터라 B가 배우는 것이 많겠지만 장애인들만 있는 쉼터에 가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B의 퇴소를 준비하며 B에게 일어난 성폭력사건은 B의 잘못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해주었다. 해맑게 웃으며 열림터를 나서는 B를 보며 B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선택이 평안하기를 바랐다.

열림터보다 장애인전문보호시설로...

“쌤, 사랑해요!” 열림터에서 5주간 살다간 생활인C는 그 어느 생활인들보다 활동가들에게 사랑고백을 많이 한 생활인이다. C는 수년간 동네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성폭력피해가 있다가 올해 사건이 인지되어 고소된 후 열림터로 입소의뢰 되었다.

C의 입소결정을 두고 열림터가 C에게 최고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열림터 활동가들의 고민이 많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던 C가 낯선 환경을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와 혼자서 샤워하기, 생리대 착용하기 등 교육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열림터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C에게 급선무는 생활적응보다는 성폭력피해 후유증을 다루는 것이었고, 가해자로부터 안전하다는 정서적 안정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지원을 결정하였다. 열림터에서 생활하면서 C는 색칠공부와 시계보기, 교통 훈련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C는 열림터 활동가와 생활인 모두에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프지 말라는 안부와 열림터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

C는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에 활동가를 새엄마라고 소개할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담당 활동가에게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다. 성폭력피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활동가가 다른 생활인들과 상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고 활동가 곁을 떠나줄 모르는 등 의존도가 입소초기보다 높아졌다.

개학이 다가오는 즈음 C의 전학을 준비하면서 C가 도저히 혼자서는 통학을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지적장애 3급인 C의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차례 C의 보호자와 연계의뢰기관과 논의를 하고 자율적인 열림터 시스템이 C의 지원에 있어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고 퇴소를 결정하였다. C에게는 장애인특수교사와 통학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전문보호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가 안전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C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는 결정이었다. C의 퇴소를 통해 열림터가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열림터에서 함께 살아가기

생활인 지원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 생활인의 특성은 각기 다르다. A와 C의 경우 본인이 아프다 생각하면 현실로 몸의 고통을 느끼는 신체화 증상으로 활동가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상담과 교육에서 지난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공통점도 있었다.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쉽게 믿거나, 의지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친절의 경계를 설명하고 현실감각을 깨우는 지원까지 재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 또한 지적장애인 피해자 지원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열림터 생활인들은 각기 다른 체형과 개성, 취미를 가지고 있고 연령이나 학력 등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지적장애인 생활인 또한 열림터 생활인의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이다. 그러나 열림터 생활인 지원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스템화 되어있어 열림터에서 장애인 생활인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

다. 동시에 열림터에서도 여러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적장애인 생활인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 현황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13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8,509건(73,275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40,388건(83.2%)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3년 전체상담은 1,531건(2,25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1,418건(2,133회)이다. 전체 상담횟수 대비 상담건수의 비율은 67.9%로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많았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801건(56.5%)이고, 가족 친 인척과 데이트 상대 등의 친밀한 관계와 이웃, 친구 및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604건(42.6%)에 해당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이 대리인에 의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상담 건수 1,418건 중 성인여성 피해자가 943건(6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성 청소년 피해자가 총 204건(14.4%)으

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피해자가 1,338건(94.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 피해자는 80건(5.6%)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가해자가 전체 1,418건 중 1,361건(96.0%)이며 여성은 57건(4.0%)으로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1,418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1,119건(7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499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간 피해가 351건(24.8%)으로 많았다. 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등) 피해는 전체 95건(7.2%), 스토킹 피해는 50건(3.8%)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205건(8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95건(29.8%)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건(37.7%)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각 70건(57.4%), 24건(50.0%)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3년 상담동향 및 정책제언

조직 차원에서의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폭력 근절 의지가 중요

2013년 전체 상담통계 중 직장 내 성폭력 상담건수는 전체 1,418건 중 295건(20.8%)을 차지하였고 작년 대비 63건(2%) 증가하였다. 고용주와 상사로 부터의 피해가 199건(64.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상 직책이나 지위가 높은 가해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가해를 저지르는 직장 내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으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반항하거나 맞서기 어려웠다. 업무 공간 외 회식자리, 직원 단합대회와 같이 업무적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에서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 그 주변사람들은 가해자의 행동을 쉽게 저지하거나 거부하기 힘든 조직문화 속에서 가해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설사 피해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더라도, 상사인 가해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 주변의 조력인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함으로써 주변인들로 하여금 쉽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관여하기 어렵게 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직장 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수사 재판과정의 협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져 사건 해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사법기관에 제기하기보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내에서 해결하길 원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자신만의 피해로 생각하기보다, 조직 내 불평등과 노동조건, 인권침해의 문제로 바라보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조직차원의 긍정적인 의지는 피

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퇴출이 나 징계로만 성폭력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복귀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윤리적인 구성원으로 거듭 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수박 겉핥기식 일회성 교육보다도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이 업무 환경에 만연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하는 과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외부 전문가나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사를 포함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해결안을 모색하는 열린 태도 역시 필요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 필요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 중 가해자의 비율은 친족 32.8%, 친·인척에 의한 비율이 24.6%로 전체 어린이 성폭력의 57.4%에 이르렀고, 유아 성폭력 중 가해자의 비율은 친족 33.3%, 친·인척에 의한 비율이 16.7%로 역시 절반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의 특성 상, 보호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고, 주 동선이 가족 및 동거인과 생활하는 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친족, 친인척에 의한 피해의 비율이 높다.

친족성폭력은 가족 내지 동거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알림으로서 자신의 가족이 붕괴하거나 본인이 겪은 피해를 외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에 큰 두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그러나 정작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은 그 관심에 비해 여전히 미비

한 실정이다.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원은 가해자와의 분리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이 큰 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와 분리된 후 생활을 꾸려나가더라도, 피해자 안전은 보장되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보호자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학교나 회사, 주변에서의 포괄적인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자극적 이슈의 소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군대 내 성폭력, 드러내기도 어렵지만 드러난 후에도 사건 해결은 요원

2013년 본 상담소에서 지원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하급자로서 성폭력 상황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후 자신의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 힘들었으며, 설사 드러내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군대 내 상명하복 군기 속에서 직급 우위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거나 개인적인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더욱 드러내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주변에 의한 2차가해와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대 내 사건을 처리하는 군법원의 구성과 시스템도 문제가 되었다. 군사법원 재판의 심판관은 사단장이 임명한 자로, 법무관 자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으며 군 당국의 입김이 재판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건이 불기소로 처리되거나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주는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하여, 군대 내 피해자들은 더 더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발 대신 인내하는 편을 택한다. 군대 내 피해자들은 군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 큰 불안을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피해를 무릅쓰며 지키고자했던 가치나 이익을 포기하고 전역하거나 제 3의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10월경, 한 여군이 상관의 괴롭힘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을 의미한다. 2013년 상담 통계 중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담건수는 전체 1,418건 중 168건(11.9%)을 차지하였고 작년보다 소폭상승한 56건(3.4%)이 증가하였다.

성폭력사건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 피해 직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인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는 피해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도리어 비난 받는 근거가 된다. 단편적으로 사건 중의 일부를 기억하기도 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피해 상황은 기억하면서 다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음을 심신상실 상태의 근거로 보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편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서의 항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을 주장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 저항이나 반항, 피해전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흔히 생각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피해자상인 ‘만취하여 운신이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라면 피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 상황을 기억해내지 못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친밀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해를 입지 않았음의 근거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 속에서 구성된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하지 말고, 각 상황 별로 개인적,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 노력과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명백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읽을까?

잇을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 형태로 실시한 전국단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50개 조사구의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현황,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성폭력 피해, 늘었나 줄었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평생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2.9%에서 1.5%로,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19.6%에서 10.2%로 감소했다. 2010년과 2013년의 성폭력 피해율을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평생 성폭력 피해율조차 감소한 결과는 성폭력 실태조사의 적은 표본크기와 가중치 설정을 고려하여 생각해야 하는데 조사표본이 2010년 2,200명, 2013년 3,500명에 불과해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다 2013년의 경우 조사표본 응답자 비율이 여성과 남성 약 7:3인데 이를

49:51로 조정하여 이전 조사와 가중치 부여값이 달랐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남성의 성폭력 피해율도 매우 낮거나 전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0.3%, 남성의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 스토킹 피해율은 0.0%로 나타났는데 이는 3,500명의 26.1%에 해당하는 912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가중치가 부여되며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범죄백서(2011)에 따르면 성폭력을 포함한 강간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처리건수가 증가했고(반면 검거율은 감소하고 불구속비율은 증가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역시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를 피해율로 단순 해석할 수는 없지만,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성폭력 피해가 줄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전자발찌?

이번 실태조사 중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29%로 1위,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가 27.4%로 2위,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선정적 내용 규제 등)이 24.3%로 3위로 응답률은 엇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중처벌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은 3.5%로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이다. 전체 조사결과를 종합한다면 이는 특정한 가해자들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처벌정책, '치료조치'의 숫자를 늘리고 법적 형량기준을 높이라는 요구라기보다, 법제도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작동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성폭력 신고는 늘어나는 반면

검거율이 하락하고 불구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 가해자 처벌 확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 대한 조사응답자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성폭력에 허용적이며 관대한 사회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얼마나 알고 이용하고 있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조사응답자 중 74.6%가 성폭력상담소를 안다고 응답한 반면, 피해자보호시설은 47.9%, 1366은 43.2%, 국선변호인제도는 35.2%,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31.7%, 윈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5.7%, 진술 조력인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였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더욱 적어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시설, 윈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대한 도움요청 경험이 전체의 0.2%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경찰 도움요청 경험 역시 전체의 1.1%에 그쳤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 및 강간미수가 6.6%였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성폭력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지만 조사 응답 결과로 본다면 긍정적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공개된 두 영상, 동화 빨간 모자를 각색해 만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취업제한제도 공익광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개최한 ‘경찰이 만든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UCC 우수작품 시상식’ 우수상 수상작 ‘کم백곰’ 등은 공공서비스를 알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성단체가 많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활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가지 정책적 시사점과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피해자 지원서비스 적극 홍보, 데이트성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대응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홍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 도입 검토, 과거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발굴 및 치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 수사기관과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성폭력가해자 처벌 강화(피해자 연령과 재범여부를 감안한 처벌 강화, 합의여부를 감경사유에서 제외)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지만 여성가족부 내 연구 결과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한 달 뒤 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성폭력 종합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2013년 6월에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종합 방지 대책’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실태조사로 찾아낸 시사점과 과제를 잘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아델의 삶>

아델의 색깔은?

품 | 본 상담소 회원

가장 진부한 문장을 먼저 쓰자. ‘영화 <아델의 삶>¹은 열다섯 소녀이던 아델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눈뜨고 한 명의 여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 영화를 보고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화는 마치 스토커처럼, ‘다른 영화들이라면 시간을 줄이거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주기 위해 잘라낼 만한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지만² 우리가 아델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다. 관객들은 ‘실시간으로 몇 년간에 걸친 아델의 인생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착각’³에 빠질 뿐, 우리는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전혀 모른다. 카메라가 집요하게 보여주는 그녀 삶의 몇몇 장(chapter) 역시 실마리를 던져주는 데 불과하다. 관객의 위치는 영화 속 등장인물 중 사미르와 같다. 엠마를 위한 축하 파티에 초대받은 남자. 단역 배우를 하노

1) 국내 개봉명 <가장 따뜻한 색, 블루>

2) 듀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La vie d'Adèle - Chapitres 1 et 2>http://www.djuna.kr/xe/index.php?mid=review&page=4&document_srl=10934121

3) 같은 글

라 소개하고, 한동안 사라졌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해 자신을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라 다시 말하는 남자. 그는 먼저 자리를 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아델을 뒤늦게 찾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다. 아델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사미르의 것이다. 수년 전 파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상대. 엠마의 연인이며, 동거를 했으며, 이제는 헤어졌다는 걸 알지만 그뿐. 모든 걸 보여준다는 환상을 제공하지만, 영화가 허용하는 개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 번째 질문. 아델은 레즈비언인가? 같은 학교 남자애의 추파를 받고 친구들이 놀려댈 때, 아델은 쑥쓰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짧은 머리를 파랗게 물들인 엠마가 자기를 찾아온 후, 너 레즈비언이냐며 추궁하는 친구들에게는 격한 욕설을 섞어가며 부정한다. 이 부인(denial) 속에 답이 있을까? 학교 층계참에서 '난 네가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어'란 말을 들려준 친구와 수줍게 키스를 나누고, 다음날 친구를 다시 만나 '작심한' 듯 한 키스를 시도 하던 아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여성(엠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위 하던 아델. 그녀가 처음 레즈비언 바를 찾았을 때, 영화가 흘러보내는 음악은 노골적으로 '난 새로운 세계를 찾았어_모든게_낯설지만_이곳이_내가_속한곳이야' 풍이다.⁴ 그러나 감상을 함께 나누는 한 친구는 아델이 '엠마-성애자'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고 (아델은 '여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엠마 한 사람에게만 성애를 느꼈다는 것) 다른 한 친구는 엠마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한 걸 보면 바이섹슈얼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아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 아델은 성숙했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녀는 나이를 먹었다. 딱진

4) Jon Dix & Beck Goldsmith의 Halcyon Daze.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던 여고생은 어느새 안경을 끼고 피로에 찌든 표정을 짓는 유치원 교사가 됐다. 그러나 성숙의 지표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아델은 후퇴했다. 고전소설 〈마리아의 일생〉을 읽으며 문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던 그녀는 잘나고 박식한 예술가 연인 엠마 곁에서 위축되고 길을 잃는다. ‘문학이라든지... 다른 걸 공부해 봐. 너도 글을 쓸 수 있어’라는 엠마의 말은 격려를 가장한 폭력의 언어다. 처음 만났을 때 왕자님처럼 멋있던 엠마는 살림을 합친 후 전형적인 가부장의 모습을 보인다. 집안일은 언제나 아델의 몫이며, 잘나고 쿨한 엠마의 친구들도 그런 아델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아델의 파스타 맛을 칭찬하지만, 정작 그녀가 남들을 접대하느라 제 식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무심하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영화 후반부 유치원 동료 교사와 바람피다 걸렸을 때, 엠마 앞에서 외치는 아델의 항변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애정을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모습에 대한 소외의 표현이다. 아델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자아로 여겨지고 싶다는 외침.

마지막, 아델은 다른 사랑을 찾을 것인가? 감독은 영화에 〈아델의 삶 챕터 1과 2〉란 제목을 붙였다. 계속해서 다른 장(chapter)이 이어질 것이라는 표시다. 영화가 끝날 때 아델의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초중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나이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에게 버림받은 후 여러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다 결국 다른 연인과 해피엔딩에 이르는 소설 〈티핑 더 벨벳〉⁵과 같은 전개라면, 아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봐도 좋다. 헤어지고 나서 몇 년 후 아델은 엠마를 불러내 ‘다른 사람도 만나 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 하고 얘기한다. 그러나 영화는 이 말이 사실인

5) 영국 작가 사라 워터스의 레즈비언 로맨스 소설.

지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델의 멍한 표정이다. 기차 안에서, 나무 아래 벤치에서, 홀로 잠겨든 바다에서 아델이 짓고 있는 묘한 표정. 텅 비고 지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읽기 힘든 얼굴. 그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델의 욕망은 곧 누군가를 깨울 것이다. 새로 빠져들 누군가를, 어쩌면 잠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희대의 '쌍년' 썸머와 헤어진 후, 어텀(가을이라는 뜻)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걸로 끝나는 <500일의 썸머>의 재치가 적용된다면, 아델의 다음 챕터는 파랑 대신 다른 빛깔로 채워질 테다. 국내 개봉명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사실 아델의 색이 아니라 엠마의 색이기 때문이다. 창백하게 탈색한 머리에 물들인 푸른빛은 영화 중반 이후 노란 색으로 바뀌고, 원작 만화에서는 이 시기를 '노랑의 시대'로 구분한다. 엠마의 머리색으로 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황, 까망, 초록, 자주... 만나는 상대에 따라 아델은 또 옷을 갈아입겠지만, 끝내 알 수 없는 것은 아델의 색이다. 터덜터덜 홀로 거리를 걸어가는 아델의 뒷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 때문이다. 아델의 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델은 무슨 색인가? 그녀 자신도 아직 모르는 답을, 우리는 선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



4

권말코너
날말퍼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가로
열쇠

1.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등 성소수자인권단체 4곳이 모여 펴낸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LGBT청소년을 대하는 직접적인 도움말을 담은 책.
2.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
5.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0000를 집단 모욕하는 성희롱으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7.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
9. 몹시 고대(苦待)하는 모양(模樣)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1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는 생활인들의 00을 위한 지원을 한다.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12.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14. 올해 개소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의 이름.
16.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한데 모아 이르는 말.

세로
열쇠

1. 지난 3월과 4월, 백령도, 파주, 속초에서 잇달아 발견된 것으로, 고정표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장착된 사람이 타지 않은 항공기.
3.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위우치게 하는 징계처분.
4. 아이에게 어떤 성적 관심을 가지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
6. 지난해 여기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이진한 전 서울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올해 2월, 경고처분을 받고 대구지방검찰청 00000으로 발령받았다.
8.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일컫는 말.
9.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높은 위치에 속하는 사람. 반성폭력 8호 기획특집 주제는 00000와 성폭력.
11. 성격이나 태도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너그럽다는 뜻의 어근. 비슷한 말로는 대담, 담대가 있음.
13. 바닷가를 따라 자라는 소나무과의 숲.
15.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
17.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하는 최고 법원. 최근 해병대 성폭력 사건과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퇴행적인 판결을 함.

 <반성폭력> 8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1						4				
						5			6	
2			3							
						7	8			
9			11							17
			12			13		15		
					14					
10								16		

정답을 6월 말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 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경화, 강정원, 김선아, 김아람, 김윤정, 김하나, 김호겸, 나재은, 등건옥, 박부진, 박상욱, 박수경, 변은미, 송원규, 신고은, 심지연, 안병숙, 안태희, 양진선, 오수연, 오주연, 유하, 유현미, 이건정, 이명신, 이복희, 이상미, 이수진, 전영미, 정수연, 정은숙, 조민이, 조소연, 최윤정, 홍광용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경화,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덕, 강미연, 강민희, 강버들,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순, 강영진, 강영화, 강인화, 강정원, 강정희,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진, 고효주, 공춘옥, 광경화, 광옥미, 광윤이, 광재호, 광현지, 구민희, 권구홍, 권기옥, 권김현영, 권나현, 권샘이, 권소영,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경,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현, 김경훈, 김광만, 김광진,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나형, 김다미, 김다운, 김대숙,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숙, 김보래, 김보민, 김보찬,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삿벌, 김서화, 김석재, 김선정,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훈,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순자, 김아름,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숙,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용란, 김우혁, 김원식, 김원희, 김유민,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정,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응진, 김의정,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원, 김재원, 김재은,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안, 김정은, 김중수(권상범), 김중용, 김종희, 김지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찬,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해리), 김진옥, 김채주, 김탁환, 김태실, 김태연, 김택진, 김하나, 김하경, 김하성, 김학실,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선,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연, 김혜수,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점, 김하숙, 김하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선일, 나운경, 나윤희, 나인선, 남길식, 남덕우, 남무희, 남민영, 남인순, 남정원,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옥, 도상금, 등건옥, 라길자, 류란,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김재연,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지영,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훈, 박다위, 박덕일,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부진, 박상규, 박상욱, 박상희,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경,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인기,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호, 박종선, 박종주, 박주연, 박준면, 박준숙, 박지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혜진, 방기연, 방은제, 방이슬, 배경, 배은경, 배자하, 배정철, 백명숙,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애, 백지선, 백지현, 백현, 백혜당, 변계희, 변순임,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희, 서미현, 서민자,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정훈, 서태자,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상나리, 성지은, 소희, 손경이, 손기주, 손명규,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송민정,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신, 송원규, 송은숙, 송은주, 송명석, 신고은,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원계,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지영, 신지혜, 신현, 신현주, 심소영, 심수희, 심지연,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해,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하영, 안형운, 양동홍, 양무현,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예경, 양영희, 양우준, 양은주, 양진선,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선곤, 오세희, 오수연, 오승민, 오승이, 오정진, 오주연, 오지일, 오지일, 오진아,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영, 우완,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정, 원형설,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세경, 유숙조, 유여원, 유정연, 유정호, 유지혜, 유하(조혜균), 유현미, 윤나래, 윤범식, 윤소희,

윤수련, 윤숙경, 윤애리, 윤양자,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희, 윤용미,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희영, 음선화, 이근정, 이경미, 이경미,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영, 이고운, 이광숙, 이규화,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신,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민정, 이민휘, 이병래, 이보라, 이복희, 이부덕, 이사랑,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 이새롬, 이서지, 이선영, 이성수, 이상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등승엽), 이수안, 이수용, 이수진, 이승구, 이승숙, 이승은, 이승자(나신), 이승진, 이안,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원경, 이원수, 이원홍, 이우정, 이우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신, 이윤옥,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경,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이혜경), 이재순, 이재원, 이정미,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효, 이종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창원, 이창윤, 이충원, 이태숙, 이태호, 이한종태, 이혜사랑, 이항신, 이현숙, 이현희, 이혜경, 이혜일, 이혜정, 이호균, 이호진, 이홍연, 이화자,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선자, 임순영, 임유영, 임유정,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홍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중, 장재운, 장정희, 장혁일, 장혜란, 장효정, 전광우, 전동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미, 전유경,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해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아,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구민, 정귀원, 정다미, 정다희, 정대근, 정탁기, 정동연, 정두영, 정분영, 정민이, 정병훈, 정보람,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수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은숙, 정인호, 정정기, 정준애, 정지연,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혜랑, 정현,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소연, 조순경, 조영선, 조윤경, 조유주, 조은샘, 조은숙, 조은희, 조인석, 조인석,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지혜, 조진희, 조혜민,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지현우, 진새롬,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대연, 최대웅, 최동석, 최란,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신규, 최성욱, 최성호,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시연, 최신혜, 최아림, 최연순, 최영숙,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용범,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은영, 최정운, 최정희, 최지나, 최지너, 최지연,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우혜인, 코너(구현지),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수선, 하주현, 한경아, 한계영,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미, 한지숙, 한채운, 한희정, 한경진, 허남주, 허라금,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혜장스님,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승기,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보선경, 황성기, 황성인, 황승희, 황승경, 황재호, 황정인,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디트리그룹(주), 클럽미즈9 라미체의원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린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하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숙,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선영, 김소연, 김예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배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부진,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송미현,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심공체, 안백련, 안지혜, 안재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정,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상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 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휘재, 조신혜, 조성진, 조영미,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우,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허정, 홍승기, 홍승아, 청담마리산부인과, 한국웰테크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백미순

만든이 _ 최란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4년 5월 **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1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